



연기연금의 혜택은 누가 받는가?

정원석 연구위원

-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연기연금”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음. 연기 연금은 기대여명이 평균보다 긴 사람들에게는 신청유인이 있기 때문에 연기연금 신청자들은 예상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민연금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음. 특히, 고소득층의 소득 및 기대수명을 고려할 때 연기연금의 혜택은 고소득층이 더 많이 누릴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기연금 이자율을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춰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연기연금”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연금 수령 시기를 1개월 늦추면 연금 수령액이 0.6%(연 7.2%) 늘어나,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출 경우 연금 수령액을 최대 36% 증가시킬 수 있음.
 - 연기연금제도는 2007년 7월 도입되었으며, 2010년 864명이던 연기연금 신청자 수는 2012년 7,763명 그리고 2015년 14,464명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하였음.¹⁾

- 연기연금의 취지는 연금수령을 늦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²⁾

-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로 하여금 연금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생애 효용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음.
 - 연금 가입기간이 짧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소득활동을 지속하면서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춤으로써 실질적인 은퇴 이후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됨.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jsppage/news/pr_news/pr_news_01.jsp).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기연금제도” 용어설명.

- 하지만, 연기연금 제도는 역선택 문제로 국민연금 재정에 예상보다 큰 부담을 줄 수 있음.³⁾
 - 국민연금 재정으로 지출되는 추가적인 연금이 연금수령액이 적은 저소득 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고소득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수지상등이 성립하려면, 가입자가 기본 연금수령 연령⁴⁾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일반노령연금⁵⁾을 선택하는 경우와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수령하는 연금 총액이 같아야 함.

- 하지만, 연기연금 수령자가 평균수명까지 연금을 수령할 경우 총연금 수령액은 일반노령연금 수령자의 총연금 수령액보다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됨.
 - 평균소득을 올리는 20년 가입자가 예상평균수명인 85세까지 일반노령연금을 수령할 경우 2억 2,399만 원을 수령하는 데 반해 연금수령 시점을 3년 연기하여 수령할 경우 2억 3,152만 원을 수령하게 됨.⁶⁾
 - 이는 연기연금으로 인한 연금 수령증가액이 연금 수령 기간이 짧아짐으로 인한 연금 수령감소액보다 큼을 의미함.
- 특히, 누가 연기연금을 신청하게 될 것인가를 감안할 경우 연기연금 지급은 국민연금 재정에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음.

■ 기대여명을 고려했을 때 기대여명이 짧은 사람보다는 긴 사람이 연기연금을 수령할 유인이 큼.

- 본인의 기대여명이 길 것으로 판단한 사람은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연기연금을 신청할 것이고, 기대여명이 짧을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일반노령연금을 수령할 것임.
 - 기대여명이 평균보다 긴 가입자들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국민연금은 평균수명에 기초하여 예상한 연금액 수준을 넘게 됨으로써 국민연금은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지게 됨.
 - 특히, 평균 수명이 길고 경제적 여력이 많은 고소득층이, 평균 수명이 짧고 경제적 여력이 적은 저소득층⁷⁾보다 연기연금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것임.

3) George Akerlof(1970)는 “The market for lemons” 논문에서 경제주체가 자신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로 활용하여 본인의 효용을 최대화시키는 행위가 평균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함을 규명하였음.

4) 1952년 출생자까지는 만 60세, 56년 출생자까지는 만 61세, 60년 출생자까지는 만 62세, 64년 출생자까지는 만 63세, 68년 출생자까지는 만 64세, 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만 65세 부터 수령하게 됨.

5)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나뉘는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을 노령연금이라 칭함. 본고에서는 연기연금과 반대의 의미로 일반노령연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함.

6) 신승희(2015. 11. 6), 「연기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의 기대연금액 분석」, 『연금이슈와 동향분석』, 제26호, 국민연금연구원.

7) 오승연(2016. 4. 4),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와 노후소득」, 『KiRi Weekly』, 제378호, 보험연구원.

■ 따라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령연금 신청 시 연금액 혹은 소득 및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연기연금 이율을 현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이러한 형태의 제도 개선은 고소득층의 연기연금 신청을 감소시켜 예상치 못한 국민연금의 추가적 지출을 감소시키고 국민연금 재정지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단, 소득 및 자산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해 현행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kiri](#)